

제 5 장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제5장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사례 37 2021전북조정76·77/78·7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기사수정)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만 편승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보도와 관련, 당사자 간 합의 불능으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언론사가 보도 제목을 수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를 받은 노동부가 B재단 대표이사에게 시정 지시 및 개선지도 처분을 내렸는데, B재단 구성원들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A연대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B재단 대표이사 사퇴를 종용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여 B재단 구성원들의 공분을 샀고, 이러한 무분별한 비난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조사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B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 파동의 본질은 인사 불만이라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 A연대는 지방노동청 조사결과와 B재단 대표이사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성명서는 시장과 시의회가 B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A연대가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희롱을 강조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통해 A연대를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1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3차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정정보도를 주장하는 신청인과 반론보도를 주장하는 피신청인 언론사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으나, 심리종결 후 피신청인 언론사가 보도 제목을 수정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특히 대다수의 재단 직원들은 내홍의 발단이 특정인의 인사 불만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주목해달라고 요청한다. 또 지역의 특정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성희롱’이나 ‘갑질’같은 자극적인 단어만을 앞세운 채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구체성을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병폐라는 여론이다. **[중략]**

D 이사는 “A연대가 성희롱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재단 이사회의 징계 의결 결과를 비난하고 대표 사퇴 등을 운운했다면 그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범죄행위다. 그것은 A연대가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나머지, ‘성정체성이 뚜렷한 남성인 재단 대표가 같은 남자 직원에게 던진 농담이나 행위를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비판했다.

A연대는 재단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정직’을 결정하지 않은 재단 이사회를 비난했다. 또 C 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례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성명을 3차에 걸쳐 발표하면서도 해당 사안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후략]**

조정불성립결정 후 기사 수정사항

기사 수정사항

〈보도 제목 수정〉

(수정 전) A연대는 형사처벌 대상

(수정 후) A연대 성명 ‘위험 수위’

사례 38 2021광주조정36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지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하면서 의혹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취, 공개한 사안과 관련, 언론사의 인터넷기사 및 유튜브 영상에서 신청인 음성 부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는 A학교가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년간 3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A학교 사무국장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기사에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함께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도 신청인의 음성을 2분가량 포함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된 학교 리모델링 비용 문제는 위탁사업자인 A학교와는 상관없음을 해명하고, 추가 취재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주무부서를 안내해주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취재 노력은 다하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후 예산 집행 의혹과 무관한 학교 사업계획 관련 내용만을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하여 신청인의 음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신청인의 반론과 해명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녹음된 음성을 보도에 활용하려면 신청인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대신 음성이 보도된 부분을 열람차단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이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 전체를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 부분이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 부분이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례 39 2021광주조정50·51/52·53 각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기사수정)

경찰이 수사권 없는 외부 기관에 장애인 성폭행 사건 조사를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를 방치하는 등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보도 제목 수정 및 추가 반론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역 복지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일반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직접 조사하면서 장애인 사건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떠넘기고, 성폭행 가해자를 방치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비판하는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장애인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후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를 조사했고, 국과수 DNA 검사 의뢰, 피해자 모친 면담, CCTV 영상 확보와 함께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혐의입증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 제목도 해당 단체의 주장만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등 실제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하여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조장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했다면서, 허위 내용이 아닌 이상 신청인들의 기사수정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가 신청인 측 반론을 보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자,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양 당사자 협의를 주문했으나, 양 당사자는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려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진술했다. 중재부는 보도의 주제목과 부제목을 수정하고, 신청인들의 반론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장애인단체들이 △일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안일하게 초동 대응해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중략]**

장애인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시장애인복지관 직원 A 씨는 지난달 ▲일 복지관을 이용하던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며 불러내 성폭행했다.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B 씨 어머니는 다음날 112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장애인 학대 조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중략]** C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은 “A 씨는 신고 당일 피해자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는 무죄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일반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직접 조사하지만 장애인 사건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떠넘기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수정사항

- 조정대상기사 중 주제목과 부제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주제목 수정〉

(수정 전) “경찰, ○○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방치”

(수정 후) 장애인단체, 장애인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촉구

〈부제목 수정〉

(수정 전) 장애인단체, 경찰 부실수사 주장, 가해한 복지관 직원 뒤 늦게 해임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절차대로 진행”

(수정 후) 가해 복지관 직원, 보름 뒤에야 해임, 경찰, “단체에 떠넘긴 적 없고 적극대처”

- 조정대상기사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신고와 함께 즉시 수사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문의해 해당 장애인 복지관장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실만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 지역단체에 떠넘길 수도 없고 가해자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례 40 2021서울조정1878·187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열람차단)

A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위원장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대거 지급했고, 현직 국회의원의 시누이가 근무하는 단체는 지출명세서 허위 공시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조금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여 신청인이 심리 중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위원장과 관련 있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대거 지원하여 예산을 나눠먹기 한 의혹이 있으며, 과거 회계부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 B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대북 지원 사업단체(사단법인 C)는 지난 5년간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허위 공시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익활동지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단법인 C 산하 사업본부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나, 이미 6년 전 퇴직하여 사단법인 C의 최근 보조금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역임한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채용된 직원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자신이 사단법인 C를 운영하며 올케인 B의 영향력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조정 심리에서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는 이미 열람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열람이 차단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로 종결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1 2021경기조정265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신청인이 공용도로에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사진 일부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용도로를 침범하여 교통 방해 시설물을 설치한 주민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불화와 반목이 커져가고 있고, 무단 시설물을 두고 상반되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심화되자 시가 대처에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개인 주택과 영업장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다발성 민원 제기, 교통 방해 시설물 설치 등의 내용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특정 주민의 제보에 의존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주택과 영업장 사진을 보도와 함께 게재하여 본인이 특정되는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마을 주민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기사를 열람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재부는 개인의 주거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어서 사진만 열람차단할 것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최근 'A시 ○○면 □□리'에 주민들 간의 불화로 인한 각종 민원이 빈발하여 슬렁이고 있다.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른 마을의 현대화로 각종 개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각종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공사 지장으로 조용하고 인심 좋던 시골 마을에 주민들 간의 반목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인접 국유지를 점용 받아 사용하는 어떤 주민은 점용지 외에 공용 도로를 침범해 교통 방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비좁은 도로에 통행 시 실수로 무단 시설물을 건드리자 A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위해 A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후략]**

※ 신청인의 주택 및 영업장 사진은 열람이 차단되었음

■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2개 보도 사진을 삭제하여 수정한다.
-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수정된 조정대상보도를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전송한다.



사례 42 2021서울조정1937·193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일부 열람차단)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이 지하철 환기구 공사 중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열람차단하여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하철 X호선 A역 ~ B역 구간 환기구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사망자는 C 회사(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X호선 구간 공사는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 중인 구간으로, 보도된 망자는 신청인 회사 소속이 아님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 확인 없이 C 회사가 사망 사고를 냈다고 보도해 신청인 회사의 업계 내 평판이 하락하고 차후 수주에도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회사가 언급된 부분을 조정대상보도에서 열람차단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언급 부분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3 2021서울조정2184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취하(일부 열람차단)

신청인의 아버지가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을 언급한 보도와 관련, 심리 전 신청인 관련 부분을 열람차단하여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작자 겸 가수인 B 씨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가수 B 씨는 트로트 가수 A의 아버지라고 언급했다.

■ 신청이유

가수 B 씨의 아들인 신청인은 본인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부친의 성범죄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이 가수 B 씨와 부자관계임을 언급하여 사회적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이 언급된 부분을 조정대상보도에서 열람차단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였다.

※ 이 사건 외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매체는 17개이며, 모든 매체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열람차단하거나 조정대상보도 전체를 열람차단하여 각 취하로 종결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언급 부분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4 2021서울조정2272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취하(기사수정)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내부 CCTV 영상과 외관을 동의 없이 노출한 사안과 관련, 자료 영상 수정 후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였음에도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현직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주점의 내부 인테리어가 드러나는 CCTV 영상과 가게 외관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술자리 폭행사건 보도의 배경이 된 주점의 업주인데, 가게의 외관 및 내부를 촬영하도록 동의해준 적이 없으며, 내부 CCTV 영상도 해당 보도에 쓰일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의 없이 공개된 영상을 본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아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업장이 불미스러운 보도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노출된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여 특정되지 않도록 수정했고,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이 사건 외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매체는 8개이며, 모든 매체가 조정대상보도 영상 또는 사진의 해당 부분을 흐리게 처리를 하거나 다른 영상 및 사진으로 교체하여 각 취하로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의 한 주점에서 한 남성이 동석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일행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 남성은 갑자기 여성을 향해 술잔을 집어던지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뜰어 말려보지만 이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에게 이 남성은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은 쓰러졌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또 다시 들어와 주저앉아 있는 여성에게 발길질을 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같이 있던 남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도 있었지만 이 경찰은 피해 여성을 돌보지도, 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후략]**



사례 45 2021서울조정244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열람차단)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자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성명 및 초상 등을 공개한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열람차단하여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B 씨가 정부 창업 지원프로그램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면서, B 씨가 대학에 입학한 계기, 프로그램 참여 과정, 구체적인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 게재에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고 했다. 보도에는 본인의 성명과 초상이 공개되어 인격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상세한 사업 내용 등 회사 정보도 노출되어 피신청인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신속한 기사의 열람차단을 희망했고,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 사건 심리가 열리기 전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여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6 2021서울조정2518·2519·2520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신청인 협회가 일감을 몰아주고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부처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바 있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원 보도는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 생산품 관련 업무수행기관인 A협회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협회는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 2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한 후원금 관련 사안은 수년 전 보건복지부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협회의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미 과거 보건복지부 감사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므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을 차단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생산물 업무수행기관, 대가성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협회가 특정시설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불법후원금 수령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20XX년과 20YY년에 보건복지부 감사 및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A협회의 후원금 수령에 불법적인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주 후 해당 보도문을 삭제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